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헌혈증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38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헌혈증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93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11.
- (3) 회 부 일 : 2024. 9.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증서를 해당 헌혈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헌혈자 또는 타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5년간(2019년부터 2023년까지) 헌혈증서를 사용한 건수는 전체 발급 건수의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바, 그 주요 사유는 헌혈증서의 분실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가 분실되는 경우에도 헌혈 또는 헌혈증서의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헌혈증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헌혈증서의 등록·관리를 위한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헌혈증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증서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혈액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헌혈자는 헌혈의 집 또는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하고 혈액원으로부터 종이헌혈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음.

「혈액관리법」

-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3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 그런데, 최근 전체 헌혈실적에 따른 헌혈증서 발급 건수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때 헌혈증서를 사용하는 건수가 현저히 낮고 그 주된 사유가 헌혈증서의 분실이라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헌혈증서의 등록·관리를 위한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혈증서가 분실되는 경우에도 헌혈 또는 헌혈증서의 양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 헌혈증서 환급 건수 및 비율 >

(단위: 건, %)

연도	전체 증서발급수(헌혈실적)	적십자사로 환급되는 증서	비율
2020	2,611,401	253,913	9.7
2021	2,604,437	246,881	9.5
2022	2,649,007	204,321	7.7
2023	2,776,291	216,232	7.8
2024. 8.	1,875,581	138,626	7.4

*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9월부터 헌혈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게¹⁾ 된 후 현재까지 재발급

1) 2021년 3월 23일 동법 일부개정(법률 제17971호)으로 헌혈증서 재발급이 가능해짐.

건수가 1% 미만이고,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고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은 건수, 즉 위 <헌혈증서 환급 건수 및 비율> 표의 적십자사로 환급되는 증서의 건수도 재발급이 가능해지기 전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므로, 헌혈증서를 분실한 후 재발급받아 병원에서 수혈받을 때 사용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헌혈증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그 활용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여 당사자의 신원 조회만으로 헌혈 기록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은 그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헌혈증서 재발급 건수 및 비율 >

(단위: 건, %)

연도	전체 증서발급수(헌혈실적)	적십자사 재발급건수	비율
2022	2,649,007	400	0.02
2023	2,776,291	4,013	0.14
2024.8	1,875,581	5,255	0.28

* 자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혈액암 등으로 수혈을 많이 받는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로 줄었으며,²⁾ 수혈비용이 실손보험³⁾에서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예전처럼 헌혈증서를 어렵게 구매 제출하기보다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점은 거액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소

2) 2009년 12월부터 암환자 기준 혈액수가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비율 5% 적용

3) <2023년 실손보험 가입율>

구분	40세 미만	40대	50대	60세 이상	전 연령 평균
남자	74.9	76.1	73.0	51.3	69.1
여자	78.2	80.5	76.9	45.1	68.8
전체	76.5	78.3	75.0	47.9	69.0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빅데이터플랫폼

극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대한적십자사는 개정안에 따라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해당 시스템에 따라 전자증서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과거 종이 헌혈증서(주민번호 오기, 훼손 등)와 IT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이 헌혈증서를 병행하여 발행할 필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헌혈 또는 헌혈증서의 양도를 확인하여 무상 수혈에 활용할 목적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그 실효성과 소요 비용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여짐.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헌혈증서 사용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헌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는 헌혈증서 재발급이 가능하여 분실로 인한 헌혈증서 미사용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바 있고,
 - 개정안대로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전자화된 증서의 의료기관-혈액원간 연계 등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서 재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헌혈증서정보시스템 추가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분실 등 헌혈증서 관리의 문제로 인해 헌혈증서 사용이 저조하다고 보기 어렵고, 헌혈증서정보시스템 구축·운용을 통해 헌혈증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무상헌혈의 취지 고려한 헌혈증서 및 헌혈예치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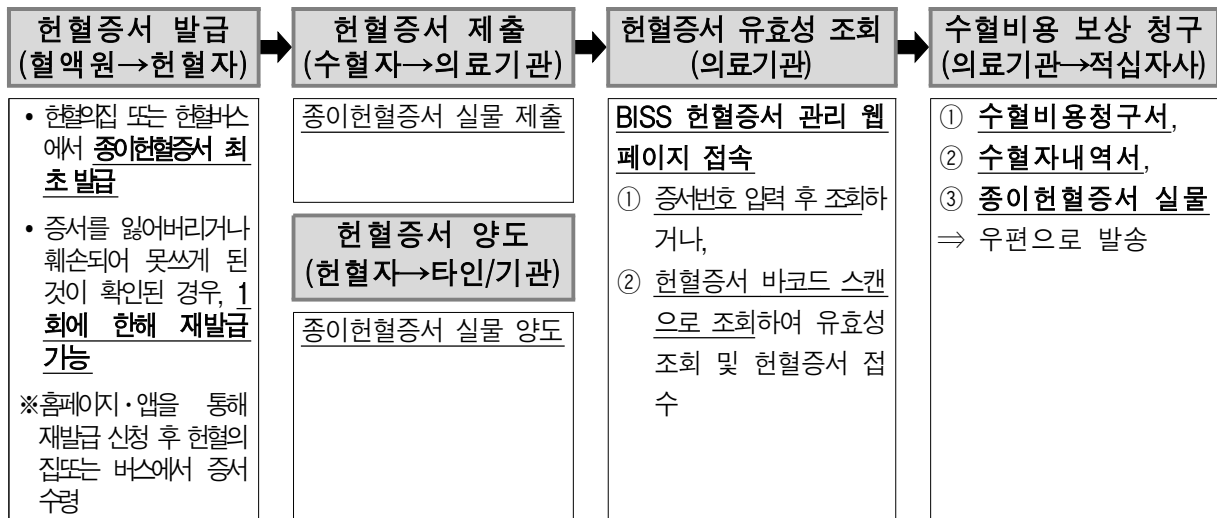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헌혈증서 사용건수 감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수혈비용의 실손보험 보장에서 기인하며 헌혈증서 분실 때문은 아님.

-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헌혈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나, 헌혈증서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부분은 미미하고, 헌혈증서의 기능은 없어지더라도 헌혈자가 헌혈한 행위를 기념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헌혈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절차
-------------	-------------------------

- 헌혈의 집 또는 헌혈버스에서 종이헌혈증서 최초 발급
-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홈페이지·앱을 통해 재발급 신청 → 헌혈의집(헌혈버스) 방문하여 1회 한하여 종이헌혈증 재발급
(※ 홈페이지에서 헌혈증 출력 불가능)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헌혈증서의 재발급)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헌혈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혈액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혈액원은 신청인의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헌혈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 번 재발급되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여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